

# 정부 부처별 성과관리 규정 분석 및 이해

- 정부지원 연구성과물 활용 및 기술료 처리 규정-

2006. 9. 21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사업화센터 황남구**

**namgu@postech.ac.kr**

# 목 차

- 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II.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III. 산업자원부 : 산업발전법 시행령
- IV. 환경부 :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규정
- V. 해양수산부 : 수산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VI. 전문기관실시로 납부 업무 흐름도
- VII. 정부기관 납부 기술료 비교
- VIII. 포항공과대학교 : 연구관리규정 시행세칙
- 부록 : 포항공과대학교 문서 예시

**나가면서**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731호

## 용어정의

-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학술진흥재단 등)
- ☞ 실 시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참여기업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 ☞ 출연금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
- ☞ 기술실시계약 :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731호

###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참여대학 이나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유로 바뀌어야 함**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731호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731호

###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731호

##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731호

1. 연구개발 재투자 : 50퍼센트 이상

2. 기관운영경비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중 50퍼센트를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정부 납부금 +  $\alpha$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임



## 11.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38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II.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2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 11.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39조 (기술료 징수)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중 정부지원출연금액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 제40조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 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특정연구개발사업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당해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 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II.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41조 (기술료의 사용)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법 제7조제 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기관(비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출연금 지분의 20% 이상 (감면액 제외)을,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기술료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 동일

## II.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4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 ①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41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및 납부실적(별지 제17호 서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 동일

## II.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

(단위 : 원)

| 최초 기술실시 계약연도 | 기술실시 계약명 | 기술 분야 | 종 사업명 | 세부 사업명 | 기관 유형 | 과제명 (책임자) | 총연구 개발 기간 | 총연구 비 집행액 (정부+민간) | 총정부출 연금 | 기술료 납부 기관 유형) | 기술료     |      |        |        |       | 연구성과 이용유형 |
|--------------|----------|-------|-------|--------|-------|-----------|-----------|-------------------|---------|---------------|---------|------|--------|--------|-------|-----------|
|              |          |       |       |        |       |           |           |                   |         |               | 징수 할 총액 | 징수 일 | 금회징수금액 | 징수누계금액 | 미징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관유형에는 과기부출연(연), 타부처출연(연), 대학, 기업, 조합, 기타중 선택하여 기재.  
 3. '기술료 납부기관'란에 기관 또는 기업명 기재,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기재.  
 4. '연구성과 이용유형'란에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함.

## II.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단위 : 원)

|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 기술실시계약명 | 기술분야 | 중사업명 | 세부사업명 | 기관유형 | 과제명 / 책임자 | 총연구개발기간 | 총연구비진행액 (정부 + 민간) | 총정부출연비 | 기술료    |          |        | 당해연도사용실적           |                 |             |               | 사용누계액 | 미사용잔액 |
|------------|---------|------|------|-------|------|-----------|---------|-------------------|--------|--------|----------|--------|--------------------|-----------------|-------------|---------------|-------|-------|
|            |         |      |      |       |      |           |         |                   |        | 징수할 총액 | 당해연도징수금액 | 징수누계금액 | 연구원에 대한보상금(50% 이상) | 연구개발재투자(30% 이상) |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 산업재산권출원 및 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설 명

1. 기술료사용실적기간은 매년 1월1일 ~ 12월31일임.
2. 기술실시계약명은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3. 과제명은 연구협약서상의 명칭을 기재.
4. 징수할 총액은 최초기술실시계약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
5. 당해연도 징수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된 기술료를 기재.
6. 기술료징수 누계금액은 최초의 징수시점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징수한 기술료의 누적액을 기재.
7. 당해연도 사용실적은 기술료징수 누계금액 중에서 한해동안 사용한 기술료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
8. 당해연도 사용실적이 없더라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어 계약해지되지 않은 과제는 기재함.
9.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함

## II.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 기술료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원)

| 최초기술<br>실시계약<br>연도 | 기술실시<br>계약명 | 기술분야 | 중사명 | 세부사업명 | 기관유형 | 과제명 / 책임자 | 총연구개발기간 | 총<br>연구비<br>집행액<br>(정부+<br>민간) | 총정부출연비 | 기술<br>료<br>납부<br>기관<br>유형) | 기술료       |            |            | 전문기관납부 |            |            |          |
|--------------------|-------------|------|-----|-------|------|-----------|---------|--------------------------------|--------|----------------------------|-----------|------------|------------|--------|------------|------------|----------|
|                    |             |      |     |       |      |           |         |                                |        |                            | 징수할총<br>액 | 금회징수입<br>액 | 금회징수금<br>액 | 납부액    | 회부액<br>금납액 | 납부누계<br>금액 | 미납<br>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 2. 기관유형에는 과기부출연(연), 타부처출연(연), 대학, 기업, 조합, 기타종 선택하여 기재.
- 3. 첨부자료: 기술료 납부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사본 1부



# II.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                                                                                                                                                                                                                                                                                                                                                                                                                                                              |                |              |                |                      |                |                  |
|--------------------------------------------------------------------------------------------------------------------------------------------------------------------------------------------------------------------------------------------------------------------------------------------------------------------------------------------------------------------------------------------------------------------------------------------------------------|----------------|--------------|----------------|----------------------|----------------|------------------|
| ① 과제번호                                                                                                                                                                                                                                                                                                                                                                                                                                                       |                |              |                |                      |                |                  |
| ② 대사업구분                                                                                                                                                                                                                                                                                                                                                                                                                                                      |                | 국책연구개발사업 등   |                |                      |                |                  |
| ③ 세부사업구분                                                                                                                                                                                                                                                                                                                                                                                                                                                     |                | 민간연구기반유지사업 등 |                |                      |                |                  |
| ④ 연구개발성과활용명                                                                                                                                                                                                                                                                                                                                                                                                                                                  |                |              |                |                      |                |                  |
| ⑤ 연구과제명                                                                                                                                                                                                                                                                                                                                                                                                                                                      |                |              |                | ⑥ 협약일                |                |                  |
| ⑦ 주관연구기관명                                                                                                                                                                                                                                                                                                                                                                                                                                                    |                |              |                | ⑧ 참여기관명              |                |                  |
| ⑨ 연구책임자                                                                                                                                                                                                                                                                                                                                                                                                                                                      |                |              |                |                      |                |                  |
| 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단위:원)                                                                                                                                                                                                                                                                                                                                                                                                                                         |                | ⑪ 연구기간       | ⑫ 총정부출연금       | ⑬ 총기업부담금             | ⑭ 총연구비         |                  |
| ⑮ 실시기관                                                                                                                                                                                                                                                                                                                                                                                                                                                       |                | ⑯ 기관명        |                |                      | ⑰ 기관유형         |                  |
|                                                                                                                                                                                                                                                                                                                                                                                                                                                              |                | ⑰ 담당자        |                |                      | ⑱ 전화번호         |                  |
|                                                                                                                                                                                                                                                                                                                                                                                                                                                              |                | ⑱ 주 소        |                |                      | ⑲ 팩스번호         |                  |
| ⑳ 실시기간                                                                                                                                                                                                                                                                                                                                                                                                                                                       |                |              |                | ㉑ 연구성과 활용일           |                |                  |
| ㉒ 기술료 산정근거                                                                                                                                                                                                                                                                                                                                                                                                                                                   |                |              |                |                      |                |                  |
| ㉓ 기술료 총예정금액                                                                                                                                                                                                                                                                                                                                                                                                                                                  |                |              |                |                      |                |                  |
| ㉔ 기술료<br>배정방법<br>(해당란<br>에<br>V표시)                                                                                                                                                                                                                                                                                                                                                                                                                           | ㉕ 고정기술료<br>( ) |              | ㉖ 연차별 기술료 배정계획 |                      |                |                  |
|                                                                                                                                                                                                                                                                                                                                                                                                                                                              |                |              | ㉗ 배정일          | ㉘ 배정금액               | ㉙ 납부일<br>(이체일) | ㉚ 납부금액<br>(이체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㉗ 배정일          | ㉘ 배정금액               | ㉙ 납부일<br>(이체일) | ㉚ 납부금액<br>(이체금액) |
| ㉕ 변동기술료<br>( )                                                                                                                                                                                                                                                                                                                                                                                                                                               |                | ㉛ 선급기술료      | ..             | ..                   | ..             |                  |
|                                                                                                                                                                                                                                                                                                                                                                                                                                                              |                | ㉜ 경상기술료      | ..             | (순)대출액 등의 ( )%등으로 표시 |                |                  |
|                                                                                                                                                                                                                                                                                                                                                                                                                                                              |                | ㉝ 최저기술료      | ..             | ..                   | ..             |                  |
|                                                                                                                                                                                                                                                                                                                                                                                                                                                              |                | ㉞ 최고기술료      | ..             | ..                   | ..             |                  |
| ㉟ 기타특기사항                                                                                                                                                                                                                                                                                                                                                                                                                                                     |                |              |                |                      |                |                  |
| <p>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제43조(산업재산권 및 발생 등의 귀속) 및 협약서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제21조(부가조건)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배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p> <p>붙임 1.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서 1부.<br/>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부.<br/>                 3.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을 경우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실시기관의 대표 : (직인)</p> |                |              |                |                      |                |                  |

## II.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 기관

| 구 분                   | 지식재산권 소유 | 법령 내용                       | 근거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주관연구기관   | 사용실적 보고<br>결과물 소유<br>기술료 배분 | 대통령령18731호<br>(2005.3.8)                |
| 한국과학재단                | 상동       | 상동                          | 기초과학 연구사업 처리<br>규정<br>(2005.8.22)       |
| 과학기술부                 | 상동       | 상동                          | 특정 연구개발 사업처리<br>규정<br>(2006.2.28)       |
| 정보통신부<br>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상동       | 상동                          |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br>규정<br>(2005.9.28.)      |
| 보건복지부                 | 상동       | 상동                          | 보건 의료기술 연구개발<br>사업 관리규정<br>(2005.12.15) |

### III. 산업자원부 : 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26조 (기술료의 징수)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Ⅲ.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 제5조 (기술료 징수율)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실시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기술료 징수기간)

①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술료 징수율이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인 경우 : 3년

2. 기술료 징수율이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인 경우 : 5년

### Ⅲ.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 제7조 (기술료 징수수단)

기술료 징수수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지불수단으로 한다.

1. 현금(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은행도 약속어음
3.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4. 공증약속어음
5. 은행지급보증서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불 수단

#### 제8조 (기술료 징수 및 납부)

-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Ⅲ.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 제8조 (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기관의 기술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60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고 100분의 40을 주관기관의 장이 사 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 Ⅲ.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 제12조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

-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당해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1.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 100분의 50 이상
  - 2.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30 이상
  - 3. 기관운영비
  -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사용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V. 환경부 :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규정

### 제35조(기술료의 징수)

- ①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상 주관연구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기업과 직접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 이상



## IV. 환경부 :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규정

### 제35조(기술료의 징수)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를,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를 전문기관에 실시계약시점부터 5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 및 실시기업이 연구개발전문기업(기술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납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 기업을 우선해야 한다.

## IV. 환경부 :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규정

### 제37조(기술료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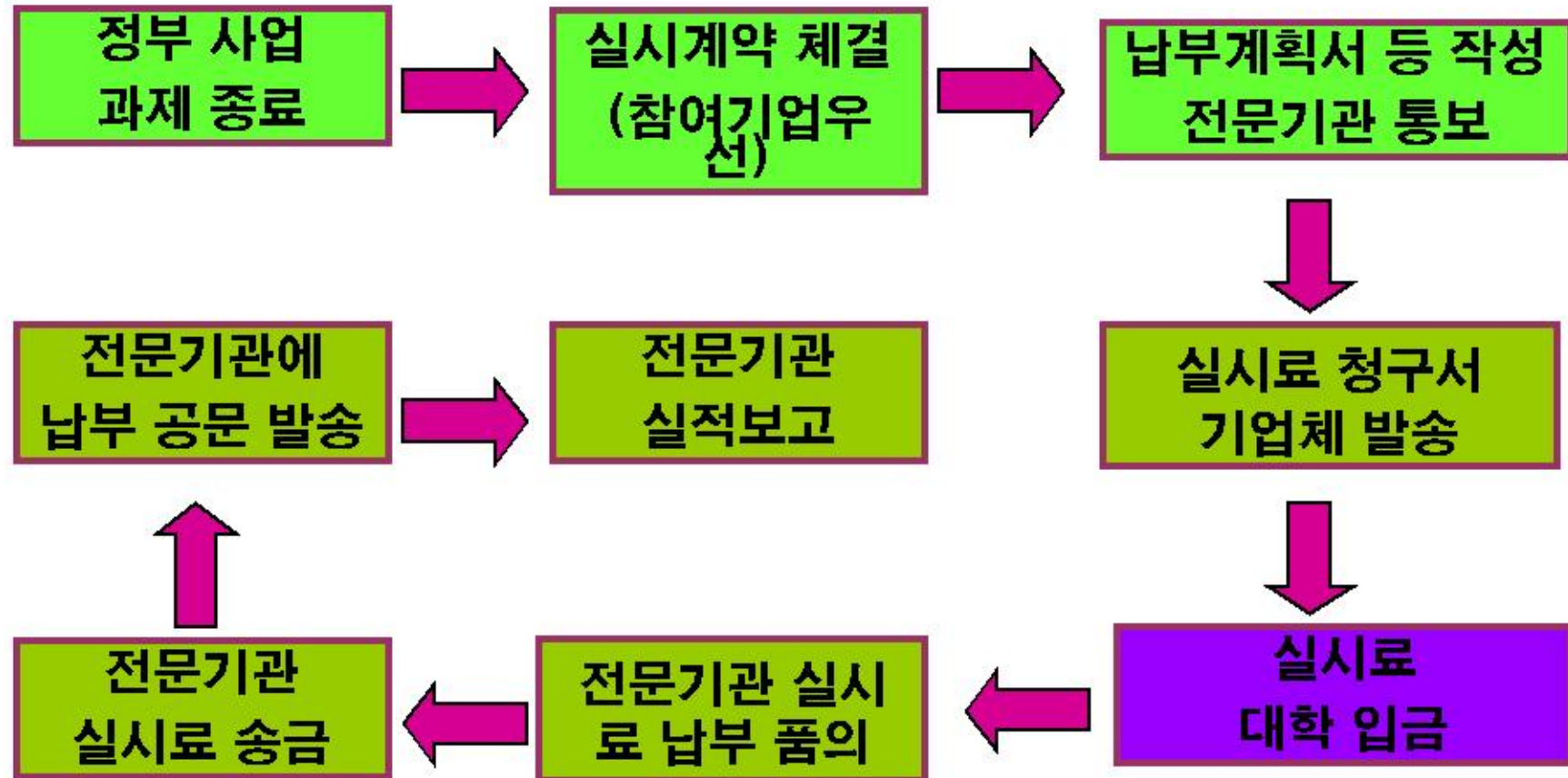
- ①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50%**를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가 제 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초과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 재투자 : 50% 이상
  - 2. 기관운영경비
  -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V. 해양수산부 : 수산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2003.7.28

### 제31조(기술료의 사용)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기관 중 특허법 제3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퍼센트 이상
  2. 연구개발 재투자 : 3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 VI. 전문기관실시로 납부 업무 흐름도



## VII. 정부기관 납부 기술료 비교

총 연구비 10억원 중 정부출연금 9억원(90%) + 대학 대응자금 1억원(10%)이며  
기술료 수입이 10,000,000원 인 경우

### ☞ 국가 연구관리규정(과기부 등)

- 전문기관 납부 : 1,800,000원(정부지분 기술료 9,000,000원 x 20%)
- 발명자 보상 : 4,500,000원(정부지분 기술료 9,000,000원 x 50%)

### ☞ 산업자원부 규정

- 전문기관 납부 : 6,000,000원(기술료 10,000,000원 x 60%)
- 발명자 보상 : 2,000,000원(기술료 10,000,000원 x 40% / 2)

### ☞ 환경부

- 전문기관 납부 : **180,000,000원**(기술료 9억원 x 20%)
- 발명자 보상 : 전문기관에서 실시

### ☞ 해양산부

- 전문기관 납부 : **270,000,000원**(기술료 9억원 x 30%)
- 발명자 보상 : 전문기관에서 실시


## Ⅷ. 포항공과대학교 :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 30 조(발명자 보상)

대학 보유 지적재산권으로 기술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료 수입중에서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 한 후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단 정부지원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기술료 수입은 사업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술료 배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 기술료 수입금이 3억원 이하일 때에는 발명자 40%, 소속부서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학 수입처리 한다.
2. 기술료 수입금이 3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대학(소속부서 포함) 2/3, 발명자 1/3 의 비율로 배분한다. 단, 소속부서로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소속부서는 발명자가 정할 수 있다.

# 부록 : 포항공과대학교 문서 예시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신자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성과관리팀장)  
(경유)

제 목 기술료 납부


1. 귀 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종료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기업과 실시계약 및 기술료를 납부합니다.  
가.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 현황

| 사업명                                | 종료일/기간                      | 연구책임자 | 실시기업   | 정부출연금    |
|------------------------------------|-----------------------------|-------|--------|----------|
| 재강분진율 저감용 납분해성 유기합로용 오일분진 저리용 소재개발 | 2004. 06. 01 ~ 2006. 06. 31 | 장윤석   | (주)이엔스 | 379,000원 |

나. 기술료납부계획서 : 붙임

붙임 1. 기술료납부계획서 1부,  
2. 실시계약서 1부,  
3. 약속어음 3매, 끝.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장수용 연구지원팀장 08/14 김경석

참조자

지침 연구지원팀-1274 (2006. 08. 14.) 김수  
우 750-78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곡동 산31번지 /http://www.postech.ac.kr  
전화 279-2572 전송 054)279-2580 /eysan@postech.ac.kr / 공보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정액기술료 납부약정서


(  대체에너지 □ 청정에너지 □ 자원 □ 에너지절약 )

| 기술개발과제명  | PLC를 이용한 일체형 이상행기 공정 및 신장회로양형 원자재기술 개발                                                                                                                                                                                                                                                                                                         |                                                                                                                                                                                                                                                                                                                                                                                                                                                                   |              |
|----------|------------------------------------------------------------------------------------------------------------------------------------------------------------------------------------------------------------------------------------------------------------------------------------------------------------------------------------------------|-------------------------------------------------------------------------------------------------------------------------------------------------------------------------------------------------------------------------------------------------------------------------------------------------------------------------------------------------------------------------------------------------------------------------------------------------------------------|--------------|
| 기관명      | 포항공과대학교                                                                                                                                                                                                                                                                                                                                        | 주요책임자                                                                                                                                                                                                                                                                                                                                                                                                                                                             | 황석환          |
| 사업주관기관   | 주 소 경북 포항시 남구 효곡동 산31번지                                                                                                                                                                                                                                                                                                                        | 담당자                                                                                                                                                                                                                                                                                                                                                                                                                                                               | 황석환          |
|          | 기관명 (주)이엔스                                                                                                                                                                                                                                                                                                                                     | 전화번호                                                                                                                                                                                                                                                                                                                                                                                                                                                              | 054)279-2282 |
| 사업성과환용기관 | 주 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2                                                                                                                                                                                                                                                                                                                            | 담당자                                                                                                                                                                                                                                                                                                                                                                                                                                                               | 김성용          |
|          |                                                                                                                                                                                                                                                                                                                                                | 전화번호                                                                                                                                                                                                                                                                                                                                                                                                                                                              | 032)860-7100 |
| 정액기술료    | 회계액                                                                                                                                                                                                                                                                                                                                            | 정액기술료 산정액(B) - 감면금액(C) = 38,184,000원                                                                                                                                                                                                                                                                                                                                                                                                                              |              |
|          | 산출내역                                                                                                                                                                                                                                                                                                                                           | A. 정부지원 총액 : 303,530,000원<br>B. 정액기술료 산정액(A×30.5%) : 72,735,200원<br>C. 감면금액(B×감면율) : 34,551,200원<br>□ 소기업(1년이하 완납 : 30%, 2년이상 완납 : 20% 감면)<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소기업 활용 20% 감면 □ 후속투자 지원 50% 감면<br><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제 징입 50% 감면<br><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저출력기술 이전 50% 감면<br><input type="checkbox"/> 기타 ( )<br>※ 감면조항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감면율이 높은 1개항목 적용<br>(단, 감면대상제외의 사업주관기관이 소기업부를 포함 경우 소기업부에 의한 감면율의 1/2를 추가로 적용) |              |
| 기술료 납부기간 | 2006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4월 22일까지 (5년)                                                                                                                                                                                                                                                                                                            |                                                                                                                                                                                                                                                                                                                                                                                                                                                                   |              |
| 납부내역     | 구분                                                                                                                                                                                                                                                                                                                                             | 납부일회                                                                                                                                                                                                                                                                                                                                                                                                                                                              | 납부액          |
|          | 1 차분                                                                                                                                                                                                                                                                                                                                           | 2006년 12월 22일                                                                                                                                                                                                                                                                                                                                                                                                                                                     | 11,632,000원  |
|          | 2 차분                                                                                                                                                                                                                                                                                                                                           | 2007년 12월 22일                                                                                                                                                                                                                                                                                                                                                                                                                                                     | 11,632,000원  |
|          | 3 차분                                                                                                                                                                                                                                                                                                                                           | 2008년 12월 22일                                                                                                                                                                                                                                                                                                                                                                                                                                                     | 11,632,000원  |
|          | 4 차분                                                                                                                                                                                                                                                                                                                                           | 2009년 12월 22일                                                                                                                                                                                                                                                                                                                                                                                                                                                     | 11,632,000원  |
|          | 5 차분                                                                                                                                                                                                                                                                                                                                           | 2010년 04월 22일                                                                                                                                                                                                                                                                                                                                                                                                                                                     | 11,632,000원  |
| 사업성과환용내역 | <input type="checkbox"/> 사업회 검토 중<br><input type="checkbox"/> 주원기관 산출분(40%)은 대체자원 입금시 공제 후 잔여액을 전담기관에 납부<br>- 1회차 : 주원기관 4652800 전담기관(에너지관리공단) 6392200<br>- 2회차 : 주원기관 4652800 전담기관(에너지관리공단) 6392200<br>- 3회차 : 주원기관 4652800 전담기관(에너지관리공단) 6392200<br>- 4회차 : 주원기관 4652800 전담기관(에너지관리공단) 6392200<br>- 5회차 : 주원기관 4652800 전담기관(에너지관리공단) 6392200 |                                                                                                                                                                                                                                                                                                                                                                                                                                                                   |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정액기술료를 정액계획에 따라 납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2006년 5월 9일

사업주관기관 : 포항공과대학교



붙임 1. 엔지니어링 증명서 1부(해당 경우에 한함).  
2. 실시기업과의 기술료징수원칙서 사본 1부(해당 경우에 한함).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소장) 귀하

# 부록 : 포항공과대학교 문서 예시

## 환경기술개발사업 실시계약서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

- 사 업 명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대분야명/중분야명 : 친환경 소재·제품 / 오염물질 제거효율 향상 소재·제품 개발
- 연구과제명 : 계강분진용 이용한 난분해성 유기화물계 오염물질 처리용 소재 개발
- 기술료 정수액 : 31,836,000 원
- 기술료 경수(납부)기간 : 1년 이내 일시납부, 2007년 12월 30일까지
- 계약당사자

(갑) 주관연구기관의 장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판길

(을) 실시기업의 대표 : (주)이앤스 (대표 : 조성국)

(주민등록번호: 570725-1057413)

(갑)과 (을)은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시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계강분진용 이용한 난분해성 유기화물계 오염물질 처리용 소재 제조 기술 을 말한다.

### 제2조(실시권의 내용)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을)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 ②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 제8조(기타)

- ①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현행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 ② 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갑)과 (을)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갑)에게 통보하는 경우, (갑)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빙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6년 8월 16일

(갑) 주관연구기관장 :

서 판 길



(을) 실시기업 대표 :

조 성 국





# 나가면서

**성공적인 게릴라는 전혀 다른 조직과 전혀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앨리스 등저(마케팅 전쟁중에서)-

**힘 센 자나 똑똑한 자보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마지  
막 까지 살아 남는다**

-찰스 다윈(진화론)-